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: 2014.06.03.

개정: 2016.08.01.

개정: 2025.09.17.

주식회사 매트릭스투자자문

제1조 (목적) 본 기준 및 절차는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, 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금소법’이라고 함)”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주식회사 매트릭스투자자문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, 그 외 업무 관련 법규(이하 “관련법규”라 한다)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투자일임"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·처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.
2. "투자자문"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(종류, 종목, 취득·처분, 취득·처분의 방법·수량·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)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.
3. "기본수수료"란 투자일임 및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 및 자문계약 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4. "성과수수료"란 투자일임 및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5. "중도해지수수료"란 계약의 중도해지 시 사전에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.

제4조 (수수료 부과기준)

1.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서 각 투자일임계약/자문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/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[별지 1]의 투자일임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른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 회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[별지 1]을 따른다. 다만, 고객과의 합의로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.

제6조 (설명의무) 회사는 금소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,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고지) 회사는 고객에게 기본수수료, 성과수수료 및 중도해지 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를 부과할 경우,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수수료 부과 관련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(공시 및 통보)

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 (기준의 제정 및 개정) 이 기준은 경영진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기준은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기준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기준은 2025년 9월 17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[별지 1]

투자일임수수료 산정 기준

1. 수수료 부과 기준표

구분	요율 및 부과기준	세부 산출 방식
기본수수료	평균잔고의 월 0.1%(후취)	- 해당 월의 평균잔고 x 월 0.1% - 원금평균잔고: 산정 기간 내 각 영업일 정규장 종가 평가잔고 합계 ÷ 운용일수 - 운용기간 1개월 미만 시 실제 운용일수 기준 일할 계산
성과수수료	기준수익률(연 8%) 초과수익의 15%	- 하이워터마크(High Water Mark) 적용 - 초과수익: 투자수익 - [(하이워터마크 × 8%) × (운용일수/365)] *하이워터마크 : 직전 성과수수료 산정 기준일의 평가액 또는 최초 투자 원금 중 큰 금액
중도해지수수료	계약 유지 기간별 차등 부과 - 1년 이내: 이익금의 50% - 1년 초과 ~ 2년 이내: 이익금의 30% - 2년 초과 ~ 3년 이내: 이익금의 20% - 3년 초과: 해지 수수료 없음	- 이익금: 직전 하이워터마크 대비 상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- 원금손실 발생 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

2. 수수료 계산기간 및 지급시기

구분	계산기간	지급시기 및 방법
기본수수료	(정기) 1개월 단위 (중도해지 시) 당월 초일 ~ 중도해지일	(정기) 당월 산정액을 익월 5일 CMS 출금 (중도해지 시) 산정된 금액을 당사 법인계좌로 직접 송금
성과수수료	(정기)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(입·출금 시) 계약일(또는 직전 징수일) ~ 입·출금 발생일	(정기) 계산기간 종료일 기준 1개월 이내 CMS 출금 (입·출금 시) 입·출금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 CMS 출금
중도해지수수료	계약일(또는 직전 하이워터마크 갱신일) ~ 중도해지일	산정된 금액을 당사 법인계좌로 직접 송금

* 계약 중도해지 시 별도의 성과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, 발생한 '기본수수료'와 '중도해지수수료'는 CMS(자동이체)가 아닌 당사 법인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납부